

번호	리	오	호
방	안	국	특
과	장	국	장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주거30410~431	(전화번호 731-6286)	전 결 규정	4 조 1 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6. 5. 13
보존연한	10년

보조기관	건설관리주관 전결 주거기획과 주거행정과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기안책임자	최춘길	86. 5.																				

경유수신참조	각안참조	발신	1986. 5. 13	검인	1986. 5. 13
--------	------	----	-------------	----	-------------

제 목 영동아파트 1지구 (반포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통보 (제1안) 개부결재

1. 주거 30410~431 (86.4.25) 호 및 건설부 주관 30410~8460 (86.4.30) 호의 관견입니다.

2. 위 대호의거 영동아파트 1지구 개발기본계획이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 되었기 주택건설촉진법 제 20조 제 2항 및 등본시행령 제 2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변경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자 합니다.

첨부 영동아파트 1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 내역 1부

(제2안) 고시제 28 호

수신 : 총무처 장관

제 목 : 관보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 영동아파트 1지구 개발기본계획이 건설부

주관 30410-8460 (86. 4. 30) 호로 변경승인되었기 별첨 고시문
(안)과 같이 관보에 게재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안) 1부 끝

제3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영동아파트 / 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 승인 통보

1. 건설부 주관 30410~8460 (86. 4. 30) 호의 관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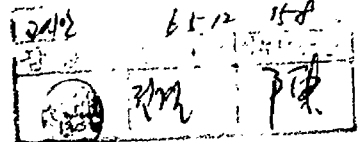
2. 영동아파트 / 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별첨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기 통보하리 업무에 참고 할것

첨부 영동아파트 / 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 승인서본 1부

수신처 : 강남구청 (주객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건설부고시 제 131 호 (76.8.21) 로 아파트지구 지정된 서울특별시 영등아파트 1지구(반포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20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기본 계획을 다음과같이 변경 고시 한다.

1986. 5.

서울 특별시장

- 지구개발 계획의 명칭 : 영등아파트 1지구(반포지구)개발기본계획
- 지구개발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일대 (1889020 H²)

• 지구개발 계획 변경 내역

5. 건축규격의 계획

나. 건폐율 규제계획

구 분	규 격	
	변 경 전	변 경 후
연 립 주 택	30 % 이하	40 % 이하
저 층 아 파 트	25 % 이하	30 % 이하
고 층 아 파 트	20 % 이하	25 % 이하
기 타 건 축 물	50 % 이하	50 % 이하

다. 건축물의 높이 규제 계획

구 분	건 축 물 의 높 이	
	변 경 전	변 경 후
연립주택	3 층 이하	3 층 이하
저층아파트	5 층 이하	5 층 이하
고층아파트	15 층 이하	6 층 이상
기타건축물	5 층 이하	5 층 이하

라. 세대밀도 규제 계획

구 분	세대수 / 주주면적 10000 M ²	
	변 경 전	변 경 후
연립주택	40 내지 80	60 내지 150
저층아파트	80 내지 200	120 내지 300
고층아파트	150 내지 300	200 내지 450

마.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제 계획

구 분	건 축 물 의 높 이	
	변 경 전	변 경 후
주 택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 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 에 따른 근린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6 배이하	수평거리의 1.6 배이하를 수평거리의 2.0 배이하로 변경

구 분	건 축 물 의 높 이	
	변 경 전	변 경 후
	마주보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0.8 배이하, 다만 마주보는 각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기준에 의함	수평거리의 0.8배이하를 수평거리의 1.0배이하로 변경
기타건축물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6 배이하	수평거리의 1.6배이하를 • 2.0배이하로 변경
	주택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0.8배이하 다만 마주보는 주택의 외벽에 창 또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	수평거리의 0.8배이하를 " 1.0배이하로 변경

○ 지구개발 계획도의 비치관서 및 열람 방법

- 비치관서 : 건설관리국 주택기획과
- 방 법 : 개별 방문 열람.